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4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 조정 및 대상보험항목 신설(유동수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3

I. 개요

1.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진성준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9. 29.
- (3) 회 부 일 : 2025. 9.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1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15%를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3년까지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었으나, 2014년부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상향된 후 한도액의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액공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보험료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저출생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태아·자녀를 위한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

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제2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 조정 및 대상보험항목 신설(유동수 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결의원안)

현 행	유동수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결의원안
☐ 보험료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4) ○ 대상 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신설> ○ 한도: 보험료별 합계액 <u>100만원</u> ○ 공제율 - 장애인보장성보험료:15% - 일반보장성보험료:12% ☐ <신설>	☐ 세액공제의 한도 조정 및 항목 신설 ○ 대상 보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진성준의원안)</u> ○ 한도: - (진성준의원안) 현행과 같음 - (유동수의원안) 보험료별 합계액 <u>120만원</u>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 70만원 한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간병보험료에 대한 세

현 행	유동수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결의원안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유동수의원안) - 2026년 1월 1일(진성준의원안)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유동수의원안) - 이 법 시행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진성준의원안)	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신설) ○ 대상 보험: <u>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u> ○ 한도: <u>50만원</u> ○ 공제율: <u>12%</u> ○ 적용기한: <u>2030년 12월 31일까지</u>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 유동수의원안 2025. 4. 17. 발의 (의안번호 9903), 진성준의원안 2025. 9. 29. 발의 (의안번호 13349), 안도결의원안 2025. 10. 23. 발의 (의안번호 13685)

☐ 3건의 개정안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의 한도를 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 보험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유동수의원안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20만원으로 상향하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

조1)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진성준의원안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도걸의원안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5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²⁾는 노동력 유지와 소득창출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적 성격이 있는 보험료 지출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및 그 외의 일반 보장성보험료(이하 “보장성보험 등”)³⁾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3) 사망 · 상해 · 입원 · 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

을 한도로 12%~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1994년 「소득세법」 전부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연 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하였고, 1999년 8월 개정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연 7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한도로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2003년부터는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는 보험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15년 5월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보험자에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소액의 보험료를 거두어 높은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중도해약이나 만기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반면에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특징이 있음.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연혁 및 현행·개정안 비교]

구 분		1994	1999	2001	2003	2014	2015	진성준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유동수 의원안
일 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 형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입 한도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20만원 (단 자동차 보험료는 70만원 한도)	
	공제율	-				12%				
장애인 전 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형태	-	소득공제		세액공제					
	납입 한도	-	100만원				120만원 (단 자동차 보험료는 70만원 한도)			
	공제율	-				12%	15%			
15세 이 하 자녀 태 아 보험료	공제 형태	-						세액공제	-	-
	납입 한도	-						100만원	-	-
	공제율	-						12%	-	-
간 병 보험료 (조특)	공제 형태	-						-	세액공제	-
	납입 한도	-						-	50만원	-
	공제율	-						-	12%	-

□ 먼저, 유동수의원안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의 공제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있고, 진성준의원안 및 안도걸의원안은 신규 보험료항목을 신설하면서 각각 100만원 및 50만원의 별도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공제한도액이 상향조정되거나 신규 항목 신설을 통해 한도가 확대되면 보장성보험 등 관련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로 인해 보장성보험 등에 대한 근로소득자의 가입유인을 제고할 수 있음. 특히, 보장성보험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고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주택화재·자동차사고·의료비 지출 등 국가가 직접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차원의 보상을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의 공제한도액이 2003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이후 20년간 유지되고 있어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근로자 가구의 연 평균 보험료 지출액이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의 연 평균 보험료지출액⁴⁾은 2019년 100만원을 넘었고, 2024년 약 113만원 수준으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고 있음.

4) 다만, 「가계동향조사」의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성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구체적으로 종신보험,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 화재보험 및 운송 관련 보험 등 기타보험(손실보상을 위한 보험), 건강관련보험(사망보험, 상해 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실비보험) 등이 이에 포함됨.

[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계지출	3,809,653	3,687,877	3,855,719	4,032,060	4,318,123	4,435,656
소비지출	2,740,086	2,646,063	2,753,779	2,862,941	3,061,791	3,149,839
기타상품 서비스	228,797	220,826	226,214	227,844	236,168	245,265
보험료 지출액	92,269	95,816	98,637	94,449	89,524	94,357
(연간 지출액)	1,107,228	1,149,792	1,183,644	1,133,338	1,074,288	1,132,284

* 자료: 「가계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KOSIS 국가통계포털)

셋째, 동 조세특례의 공제한도액이 지난 2003년 조정⁵⁾된 이후 20년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물가지수는 2003년 69.9에서 2024년 114.18로 약 63.3%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동 조세특례 공제한도액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⁶⁾.

[2003년~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기준: 2020년=100)

구 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2023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69.9	81.65	93.01	99.08	111.59	114.18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국가데이터처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제한도 상향조정의 효과가 역진적일 수

5) 이는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한도만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2001년 해당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공제한도의 조정없이 계속 100만원이 적용되고 있음.

6) 이에 자동차보험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장성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촉진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소득 분위가 올라갈수록 보험료지출액이 증가하고, 3분위 이상인 경우에 연 평균 보험료 지출액이 현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공제한도액인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공제한도액의 상향 조정 효과는 3분위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중 보험료 지출액 규모]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월간)	(월간)	(월간)	(월간)	(연간)
전체평균	98,637	94,449	89,524	94,357	1,132,284
1분위	40,035	40,426	36,605	39,248	470,976
2분위	70,343	64,084	61,938	66,249	794,988
3분위	97,620	93,749	91,001	91,183	1,094,196
4분위	121,499	119,355	113,559	120,442	1,445,304
5분위	163,632	154,592	144,414	154,592	1,855,104

*자료: 「가계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KOSIS 국가통계포털)

한편, 동 개정안이 입법화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 기준 33%에 해당하는 면세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효과가 적용되지 못함.

□ 다음, 유동수의원안은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는 70만원을 한도로 하여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고 있고, 진성준의원안 및 안도걸의원안은 각각 100만원 및 50만원의 별도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현행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차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동 조세특례의 취지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즉, 동 조세특례는 보장성보험료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2024년 개인 기준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69.2만원(보험료 세액공제의 납입한도액 100만원)이라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외 다른 보장성 보험의 가입유인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자동차보험의 유무에 따라 동 세액공제의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69만 2,000원 수준으로 사실상 자동차보험의 유무에 따라 동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느바,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납입한도액을 정하거나, 보험항목을 신설하여 보험종류별로 별도 한도를 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유무에 따른 납세의무자 간 세액공제액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다음의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⁷⁾해야 하는데,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2013년 59만 1,000원에서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2024년 개정안에서 규정하려 하는 한도액인 70만원과 유사한 69만 2,000원까지 상승하였는바 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줄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평균 보험료가 감소세인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의 평균보험료는 증가추세에 있어, 개정안과 같이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공제 한도가 설정될 경우, 자동차 보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충분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둘째, 보장성 보험의 보장 항목을 근거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은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세액공제의 형태로 보전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의무가입으로 인해 개인별 자동차 보험료 납부 규모가 세액공제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으나, 해당 보험 역시 민간의 보험가입을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닌 용역임을 고려할 때, 기타 보험과 별도로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보장성 보험 간 형평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 다음으로 진성준의원안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대해 별도로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인데, 저출생 심화에 따라 출산장려 문화 조성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태아·자녀를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위한 보험에 대한 한도 신설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⁸⁾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반등하였으나,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⁹⁾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5세 이하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최근 반등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임.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가구¹⁰⁾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은 월 111만 6천원으로 2024년 가구 소득 대비

8)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9)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10)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17.8%, 가구 지출 대비 29.4%로 나타났음. 이는 2021년 월 97만 6천원 대비 14만 증가(14.3%)¹¹⁾한 수치임. 또한 중국 내 인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를 경우 한국에서 자녀를 만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의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는 최근 출산·보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사업 등 공적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²⁾ 또한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¹³⁾,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출산·보육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세제지원 제도로 자녀장려금, 6세 이하 출산·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¹⁴⁾는 소득공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보험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

11)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5.5. 참고로 동 조사는 3년 주기 조사임.

12)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무료): 자녀 희귀질환 및 엄마 임신질환 보장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1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등

13)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14) 2023년 33%

우 세제혜택의 신설에 따른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게 되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따라서 역진적 성격이 있는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재정 여력을 활용하여 예 산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셋째, 태아는 출생 전임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 어, 현행법상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태 아보험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기에 앞서, 태아가 기본 공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관련 규 정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안도걸의원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간 50만원의 별도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간병 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높은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됨. 특히 우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비중은 20.3%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년부양비¹⁵⁾가 2025년 29.7%에서 지속 증가하여 2070년에는 100.6%가 될 것으로 추계됨.

[노년부양비 추계 내역]

15)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단위: 100명당 명)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노년부양비	21.8	29.7	38.6	48.6	60.5	69.9	78.6	82.8	90.4	98.2	100.6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17~2067), 국가승인통계 제10133호」, 2019.03.28. 공표

주: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이에 따라 간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간병인력을 이용하기에는 재정적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임.

대표적인 장기간병 요인인 치매환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율은 2023년 기준 9.25%고, 2026년에는 치매 환자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됨.¹⁶⁾

16)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5.3.13

[치매 환자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2030년	2040년	2044년	2050년	2059년	2070년
치매 환자 수 (단위: 명)	970,759	1,014,865	1,212,315	1,795,287	2,007,848	2,258,915	2,335,939	2,238,013

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5.3.13.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간병 1733.9만원, 시설·병원 간병 3138.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게 나타남. 특히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데,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23년 치매 환자의 치매 관리 비용]

구분	지역사회 거주 환자	시설·병원 거주 환자
총 치매 관리 비용	1733.9만 원	3138.2만 원
보건의료비1)	438.2만 원	1489.1만 원
돌봄비2)	1162.2만 원	1533.1만 원
간접비3)	133.5만 원	116.0만 원

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5.3.13.

1) 보건의료비 : 병원 입원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2) 돌봄비 : 장기 요양비, 간병비, 병원 이용 교통비, 보조용품 구입비

3) 간접비 : 환자 시간비용, 보호자 시간비용, 환자 생산성 손실 비용

또한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욕구에 대한 조사 결과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치매 환자 가족의 치매 정책 지원 욕구]

구분	치매 진단 과정		치매 치료 및 돌봄 과정		치매 환자 가족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지역사회	진단비 경감(52.9%)	검진주기 단축(24.3%)	경제적 비용 경감(62.9%)	치매 관리 및 돌봄 기관 확대(12.9%)	경제적 비용 경감(42.9%)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28.6%)
시설·병원	진단비 경감(54%)	검진 장소 확대, 진단 절차·검사 방법 안내(12.7%)	경제적 비용 경감(50%)	치매 관리 및 돌봄 기관 확대(16.7%)	경제적 비용 경감(42.7%)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19.3%)

자료: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5.3.13.

따라서 간병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등 중증질환 환자에게 간병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경우,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사회적 측면에서 노동공급 손실을 완화할 수 있으며,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민간 간병보험이 공적 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민간 간병보험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적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다음의 점에 대해서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민간 장기요양(간병)보험은 역선택·보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영역인데, 이러한 문제를 세제지원으로 보완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간병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지속기간·강도가 장기적이며·불확실성이 낮은 점, 보험사고의 단기 발생확률이 낮은 점,

건강정보가 비대칭적으로 편중된 점의 특성으로 인해 저위험자의 체감가치가 낮아 저위험자의 가입·갱신 포기, 반복적 갱신·해지 등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기 쉬움. 그런데 역선택이 지속될 경우 고위험군만 잔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하여 갱신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또한, 높은 손해율을 보전하기 위해 보장을 약화하고 약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장 부족 문제도 발생함.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만으로 간병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임. 따라서 해당 재원을 활용하여 공적 재보험을 도입하여 고위험구간의 손해를 일부 흡수하는 방안, 최소 지급기간·지급금액 보장·판정기준·물가인상에 따른 간병비 조정 등의 보험계약에 명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간병보험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재정 누수 요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간병보험의 표준화 및 가격·보험조건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측(보험계약자)측만 재정적으로 보조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¹⁷⁾는 소득공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보험가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세제 혜택의 신설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소득세

17) 2023년 33%

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따라서 역진적 성격이 있는 조세지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재정 여력을 활용하여 예산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참고로 정부는 국정과제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의 중복성 여부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간병 부담 완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 → 30% 내외**)

* '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 지정·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¹⁸⁾를 합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6조 9,020억원에 달하였고, 공제대상 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2025년 7조 3,711억원, 2026년 7조 7,56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전체 조세지출 중 지출규모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2024년 기준 전체 국세감면액(70조 5,171억원)의 9.79%를 차지함.

18)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1항)

[2020년~2026년 보험료 세제지원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국세감면액	43,630	47,542	54,607	63,083	69,020	73,711	77,560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 한편 예산정책처는 유동수의원안에 따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2,250억원, 2030년 2,727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조 2,414억원(연평균 2,48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유동수의원안	△2,250	△2,361	△2,477	△2,599	△2,727	△12,414	△2,4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